

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(수정)

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·지원하기 위한 『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』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7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

사업개요

사업목적 :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

지원대상 : 예비창업자

- ※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4호·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※ 신청자격은 본 공고 「3. 신청자격 및 요건」 참조

협약기간 :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('26년 6월 ~ '27년 1월 예정)

선정규모 : 총 300명 내외 (일반분야 110명, 특화분야 190명 내외)

- ※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·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(평균 0.4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사업화 자금	+	창업프로그램
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		BM 고도화, MVP 제작, 멘토링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

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('26.3.6., 창업진흥원 유튜브 계정)

□ 세부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등

구분	지원 세부 내용						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제품 제작, 지식재산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.4억원 지원 ▪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 ▪ 사업화 자금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																				
	<p>《단계별 차등 지원 (총 2단계)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단계) 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최소기능 제품(MVP) 제작 등 사업화 준비 자금 지원(20백만원) • (2단계)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사업계획의 진척도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평가 • 평가 결과에 따라 50% 내외 선정하여 추가 정부지원사업비 지원 <p>※ 총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100% (자기부담사업비 없음)</p>																				
	<p><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></p>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비 목</th> <th>비목 정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• 사업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외주용역비</td> <td>•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경우,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</td> <td>•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</td> <td>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</td> </tr> <tr> <td>인건비</td> <td>•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신청자(예비창업자)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</td> </tr> <tr> <td>지급수수료</td> <td>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멘토링비, 시험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 등)</td> </tr> <tr> <td>여비</td> <td>•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교육훈련비</td> <td>•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광고선전비</td> <td>• 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 목	비목 정의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	외주용역비	•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경우,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	인건비	•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신청자(예비창업자)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	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멘토링비, 시험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 등)	여비	•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교육훈련비	•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광고선전비	• 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	비 목	비목 정의																			
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
	외주용역비	•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경우,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
	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
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																			
	인건비	•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신청자(예비창업자)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																			
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멘토링비, 시험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 등)																				
여비	•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
교육훈련비	•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
광고선전비	• 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
창업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 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프로그램 예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BM 수립</td> <td>BM 발굴, 팀 빌딩, BM 고도화</td> </tr> <tr> <td>② 아이템 구현</td> <td>MVP 제작, 시장검증, 멘토링</td> </tr> <tr> <td>③ 투자유치</td> <td>투자 교육, 모의 및 실제 투자 IR</td> </tr> <tr> <td>④ 자율 프로그램</td> <td>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	프로그램 예시	① BM 수립	BM 발굴, 팀 빌딩, BM 고도화	② 아이템 구현	MVP 제작, 시장검증, 멘토링	③ 투자유치	투자 교육, 모의 및 실제 투자 IR	④ 자율 프로그램	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										
	유형	프로그램 예시																			
	① BM 수립	BM 발굴, 팀 빌딩, BM 고도화																			
	② 아이템 구현	MVP 제작, 시장검증, 멘토링																			
③ 투자유치	투자 교육, 모의 및 실제 투자 IR																				
④ 자율 프로그램	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																				
후속지원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초기창업패키지 연계)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'최우수'인 기업은 차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등 우대 혜택 제공 																				
	<p>※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</p>																				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(기준일 : '26.1.22.)

※ '26.1.23.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

※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, 각자대표, 공동대표,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

□ 자격 예외 요건

- 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

《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》

- '26.1.22. 기준,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,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(법인사업자 불가)
- 다만,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의 제품·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 (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)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※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

- ②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('26.1.28.~2.27.) 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·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

- 다만, '26.1.28.(수) 이전의 ① 폐업(해산·청산) 이력이 있는 경우,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, ② 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, 폐업일로부터 3년(부도·파산의 경우 2년)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

- 이종·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(5자리)를 기준으로 판단
([\[별첨 4\] 이종·동종 구분 기준 내용 참고](#))

※ 세세분류 일치 시: 동종업종으로 판단 / 세세분류 불일치 시 : 이종업종으로 판단

□ **신청분야** :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

신청분야	분야별 설명	선정 규모	
일반분야	정보·통신, 전기·전자, 기계·소재(재료), 바이오·의료(생명·식품), 에너지·자원(환경·에너지), 화학(화학·섬유), 공예·디자인 등 쉰 기술 분야를 지원	110명	
특화분야	여성	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에 한함	70명
	소셜벤처	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지원 ※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(협약기간 이내)까지 '소셜벤처기업' 판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'실패' 판정	70명
	사내벤처	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 * 사내벤처 분야는 별도 공고 예정	50팀

□ **신청 제외 대상**

① **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**

(다만, 채무변제 완료, 회생인가, 면책결정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예외 인정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**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**

(다만,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예외 인정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**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**

(다만, 전액 반환 완료, 면책결정 확정,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 중인 경우 예외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- 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([붙임 1](#)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-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, [붙임 2](#)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자
- ※ 중단·중도포기 포함
- ※ '19년 이후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이력이 있는 자로서, '최우수' 성과평가를 받고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는 제외
- ⑥ 2026년 중앙정부·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(기업), [붙임 3](#)] 참고
- ※ 다만, 같은 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(공고 제2025-648호)
- ⑦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
-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
- ※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④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
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-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- 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
- 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대상자
-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- ⑬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50%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

4

접수방법

□ **접수 기간** : '26. 3. 6.(금) ~ 3. 24.(화), 16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- ※ **16:00 정각 이후 신규 신청 불가**
 - ※ **제출완료 버튼 클릭 시 최종 접수 완료**
- ② **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**하고, 접수된('26.3.24.(화) 16시)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

□ **접수방법**

○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(www.k-startup.go.kr)

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**실명인증을 실시**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
※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※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별첨 5](#)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① **반드시 신청자(예비창업자)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

② 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, **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**

- ※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- ※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'주관기관'과 시스템 접수 '주관기관' 동일 여부 필수 확인
- ※ **상이한 경우, K-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**

③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**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□ **제출서류**

○ **사업계획서 1부** ([별첨 1](#) 양식)

※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○ **기타 제출서류 각 1부** (해당 시, [별첨 2](#) 참고)

제출서류	제출 방법	비고
① 사업신청서	온라인 입력	-
② 사업계획서	파일 첨부	용량 제한 30MB
③ 증빙서류 (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포함) ※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	①파일 첨부 또는 ②공공마이데이터 '동의' 시 서류(행정정보) 자동 제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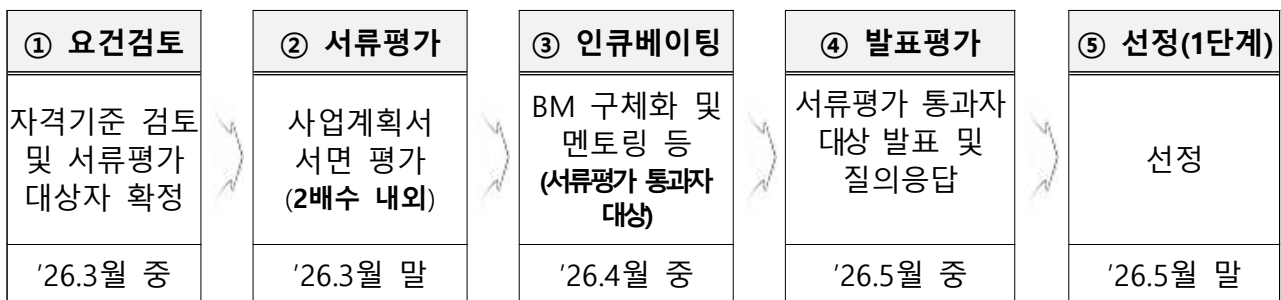
※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(행정정보) 수집 과정에서 **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**, 해당 오류로 인해 **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**
 (필요 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)
 ※ 가점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**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5 평가 및 선정절차

□ **평가 절차** : 총 3단계 평가(서류 → 인큐베이팅 → 발표)를 통해 1단계 대상자 선정

※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**선택한 주관기관**에서 안내 예정

<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(안) >



**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·중복성 검토는
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
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**

※ 상기 일정은 신청자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방법

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

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(가점 포함)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

-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사업 신청·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, 공고문상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

-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'예비창업자'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*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, 신청자격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

*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명, 폐업사실증명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**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**

<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>

구분	대상자	점수	비고(제출서류 등)
가점 (최대 3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공지능(융합혁신) 대학원 졸업생 인공지능대학원(10개) : 고려대, 광주과학기술원, 서울대, 성균관대, 연세대, 울산과학기술원, 중앙대, 포항공대, 한양대, KAIST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(9개) : 경희대, 동국대, 부산대, 아주대, 이화여대, 인하대, 전남대, 충남대, 한양대 ERICA 	2점	[별첨 2] '증빙서류 제출 목록' 안내 참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('24.2.27.~'26.2.26.)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다수의 수상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	1점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후테크 분야 창업 예정인 자 (클린테크) 재생에너지, 에너지신산업, 탈탄소에너지 (카본테크) 탄소포집, 공정혁신, 모빌리티 (에코테크) 자원순환, 폐기물절감, 업사이클링 (푸드테크) 대체식품, 스마트식품, 애그테크 (지오테크) 우주기상, 기후적응, AI·데이터금융 * 기후테크 세부유형(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, '23년) 	1점	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
서류평가 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5년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에 진출(수상)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동일하여야 하며, 서류평가 면제는 팀당 1회에 한함 (반드시 팀원 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) 		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5년 중기부 OpenData X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성실경영 심층평가' 통과자 중 청년* 대상자 : 성실경영 평가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)를 통과한 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자 * 청년 :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자 		[별첨 2] '증빙서류 제출 목록' 안내 참고
우선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5년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수상자(대상, 최우수상) 수상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		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5년 사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'25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전 인큐베이팅 운영 주관기관에서 상위 3인 우수 수료자로 선정된 자 		

③ **사전 인큐베이팅** :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모델(BM) 구체화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보완 및 신청자 역량을 검증

- 인큐베이팅은 신청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역량 검증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

※ 집체교육 및 멘토링 실시 예정이며, 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함

※ 서류평가 면제자도 인큐베이팅에 참여하여야 하며, 신청자 본인 참여가 원칙

④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전략, 성과 창출 계획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발표평가는 신청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
※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대내외 여건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할 수 있음

- 우선 선정 대상자도 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

⑤ **1단계 선정**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

-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범위 내에서 1단계 예비창업자를 선정하고, 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·공고

* 예비창업자 선정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차등 배정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

※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의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< 1단계 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약서 제출' >

- 1단계 선정 통보된 예비창업자는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일*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 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예비창업패키지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해야 함
 ※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, 제출 요청일은 선정 통보일을 의미
-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가능
-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, 딥테크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 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
 ※ 예비창업패키지, 초기창업패키지,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,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 (TIPS창업사업화, 프리팁스, 포스트팁스), 창업중심대학, 재도전성공패키지, 제품화 ALL-In-One팩,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
- 다만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, 딥테크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
- 제출한 '협약체결확약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,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,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,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, 대표자(신청자)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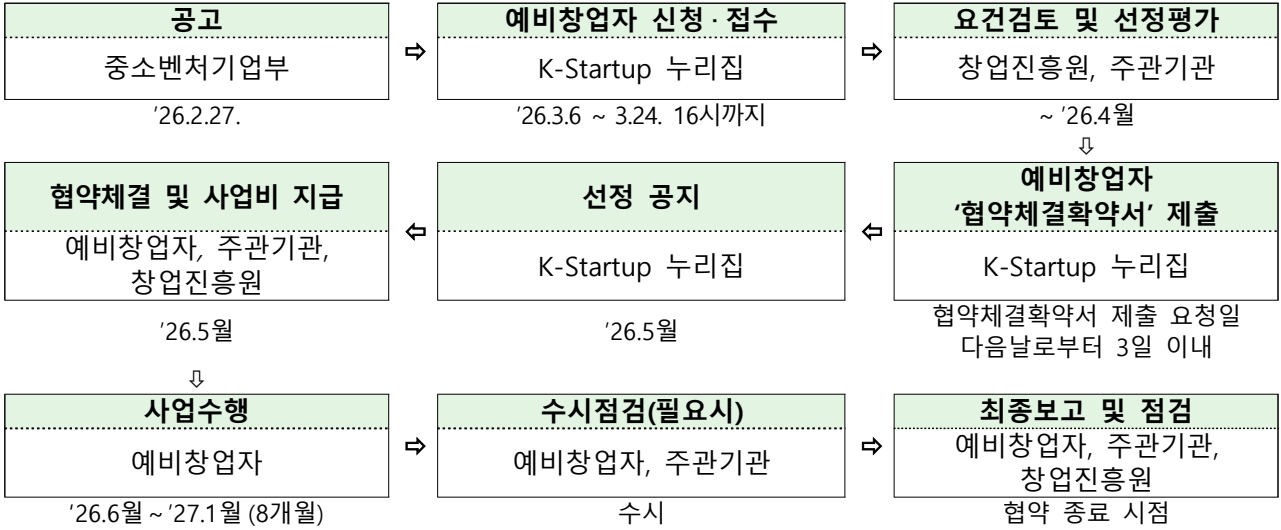
※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(서류평가-발표평가)별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▪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, 해결방안(필요성) 등
실현가능성	▪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
성장전략	▪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
팀(기업) 구성	▪ 대표자 및 고용 (예정)인력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6

유의사항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
* **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광장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**
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창업(사업자 등록) 예정인 당사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자는 K-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(전화번호·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)를 현행화하여야 하며,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·사업계획서·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, 위조·변조·표절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 - ※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※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(협약체결) 불가. 단, '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 - ※ **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**
- 동 사업 신청자는 '26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(신청자)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본인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, 딥테크 청년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 처리됨
 - 다만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·사업계획서·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, 위조·변조·표절, 도용, 누락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사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선정자의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,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- 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□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- 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상의 창업(사업자 등록)을 이행하여야 함
 -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(협약기간 이내)까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'소셜벤처 판별기준'을 충족하고, 최종 점검 시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*을 통해 '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(판별결과: 인정)'를 제출하여야 함
- *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 : <https://sv.kibo.or.kr>
- 선정자가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,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,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(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)을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,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, 중소벤처기업부·전문기관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

7

기타사항

□ 문의처 : 주관기관 담당자

구분	분야	주관기관명	소재지	담당자 연락처
1	일반	건국대학교	서울	02-450-3138
				02-450-3347
2		광운대학교	서울	02-940-5223
				02-940-5224
3		동국대학교	서울	02-2088-3737 (내선 1116, 1119)
4		서울과학기술대학교	서울	02-970-9296
				02-970-9719
5		연세대학교	서울	02-2123-4306
				02-2123-4412
6		경기대학교	경인	031-249-8661
				031-249-8666
7		서울대학교(시흥)	경인	031-5176-2236
				031-5176-2238
8	수원대학교	경인	031-229-8574	
			031-229-8588	
9	인천대학교	경인	032-835-9687	
			032-835-9691	
10	인하대학교	경인	032-860-9152	
			032-860-9227	
11	가톨릭관동대학교	강원	033-649-7348	
			033-649-7638	
12	국립한밭대학교	충청	042-828-8662	
			042-828-8669	
13	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	충청	042-385-0532	
			042-385-0582	

구분	분야	주관기관명	소재지	담당자 연락처	
14		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	충청	044-860-3811	
				044-860-3814	
15		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	충청	043-710-5925	
				043-710-5926	
16		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	호남	062-364-9166	
				062-364-9167	
17		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	호남	061-661-1931	
				061-661-1936	
18		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	호남	063-220-8943	
				063-220-8960	
19		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	제주	064-710-1993	
				064-710-1994	
20		계명대학교	대경	053-620-2036	
				053-620-2044	
21		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	대경	053-756-7610	
				053-759-9658	
22		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	동남	055-291-9395	
				055-291-9384	
23		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	동남	051-749-8913	
				051-749-8975	
24		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	동남	052-230-3414	
				052-230-3415	
25		특화	벤처기업협회	서울	02-6331-7125
					02-6331-7129
26	한국여성벤처협회		서울	02-3440-7464	
				02-3440-7465	

*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·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**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중 한 개의 주관기관만 신청 가능(중복불가)

붙임 1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※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- 예비창업패키지 (생애최초·공공기술 창업사업화 포함)
- 초기창업패키지 (실험실특화 포함)
-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
 - *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('21~'22년 에그, 씨앗, 이웃, 가치, 스타))로 지원받은 자(기업)는 신청 불가
 - ** 단,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('19~'20년 창구, '20년 마중, 정글, 엔업),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('17~'21년)만 지원받은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-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
-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
- 창업성공패키지 딥테크창업사관학교
- 창업중심대학
-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(~2023년)

붙임 3

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예비창업패키지(사내벤처팀)	중소벤처기업부
2	· 초기창업패키지(일반형)	중소벤처기업부
3	· 초기창업패키지(딥테크 특화형)	중소벤처기업부
4	· 초기창업패키지(투자연계형)	중소벤처기업부
5	· 창업도약패키지(일반형)	중소벤처기업부
6	· 창업도약패키지(딥테크 특화형)	중소벤처기업부
7	· 창업도약패키지(투자연계형)	중소벤처기업부
8	·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	중소벤처기업부
9	·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	중소벤처기업부
10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TIPS 창업사업화)	중소벤처기업부
11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프리팁스)	중소벤처기업부
12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포스트팁스)	중소벤처기업부
13	·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14	·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15	· 제품화 ALL-In-One 팩	중소벤처기업부
16	·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	중소벤처기업부
17	·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, 딥테크 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8	· AI·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	과학기술정보통신부
19	·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기후에너지환경부
20	·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1	·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2	·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3	·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	문화체육관광부
24	·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5	·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6	·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·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7	·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8	·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9	·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30	· (콘텐츠)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31	· (콘텐츠) 투자 연계 창업도약	문화체육관광부
32	·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	통일부
33	·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	통일부
34	·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	해양수산부
35	·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	산림청
36	· 경북·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37	·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	방위사업청

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

-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부당개입 주요유형	
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	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
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	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
③ 허위 대출 약속	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
④ 정부기관 등 사칭	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
⑤ 부정청탁	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
⑥ 계약불이행	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
-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정부,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<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>

- (창업진흥원 누리집) <https://www.kised.or.kr> > 고객광장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